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84

발의연월일: 2025. 1. 21.

발 의 자:김소희·최수진·인요한

김위상 · 김예지 · 우재준

조경태 · 김상훈 · 주호영

이양수 · 성일종 · 김선교

고동진 · 김성원 · 박덕흠

김기웅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온실가스감 축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규정하여 예산과정에서 기후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국가재정 운영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.

하지만,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 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적응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, 이를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9호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기후변화적응 예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기후변화적응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기후변화적응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기후변화적응 예산서에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기후변화적응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기후변화적응 예산서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27조의2(기후변화적응 예산서
	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기
	후변화 적응에 미칠 영향을 미
	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기후
	변화적응 예산서"라 한다)를
	작성하여야 한다.
	② 기후변화적응 예산서에는
	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대효
	과, 성과목표, 효과분석 등을
	포함하여야 한다.
	③ 기후변화적응 예산서의 작
	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	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
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	
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	
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
1. ~ 9의2. (생 략)	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9의3. 기후변화적응 예산서
10. ~ 16. (생 략)	10. ~ 16. (현행과 같음)